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정관

개정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The Korean Society of Food, Drug and Cosmetic Regulatory Sciences, 이하 "본회"라 한다.)라 부른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과 관련된 국내·외의 각종 법제와 규제에 대한 연구와 교육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법령과 규정의 제·개정 및 정책개발에 기여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의 개최
2. 전문학술지 및 기타 도서의 간행
3. 외국 학회 등과의 교류·협력
4. 관련정책의 연구, 개발 및 제안
5. 회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교육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종류】

본회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 회원 :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 한 자
2. 학생회원 :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학생
3. 도서관회원 : 본회의 학술지를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도서관
4. 단체공로회원 : 본회를 위하여 특히 공헌이 많은 단체로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단체
5. 명예회원 : 본회를 위하여 특히 공헌이 많은 인사로서 이사회 승인을 얻은 자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모든 회원은 총회 및 학술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와 회칙을 준수할 의무 를 갖는다.
- ② 정회원은 총회 소집권, 총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회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개정 조문

1. 본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업수행을 방해한 때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정수】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5인 이내(수석부회장 포함)
3. 사무총장 1인
4. 이사 5인 이상 30인 이내
5. 감사 2인
6. 집행위원회 위원장 : 총무, 재무, 학술, 편집, 홍보 위원회 등 집행위원회 위원장에 각 1인

제10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궐위시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수석부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③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④ 사무총장 및 집행위원장은 회장이 추천 및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⑤ 회장,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회장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를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학회 사무를 총괄 관리하며, 집행위원회 업무를 분담 및 조정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구성원이 되며 소정의 회무를 심의·의결한다.
- ⑤ 집행위원장은 해당위원회의 회무를 집행한다.
- ⑥ 감사는 본회의 운영전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이사회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3조【총회의 구성 등】

-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2월 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③ 회장은 회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회의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회장은 총회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총회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

개정 조문
여야 한다.
<p>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이사 인준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및 집행임원회에 위임할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p>제15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7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6조 【의사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회원수 3. 의결사항 4. 의사경과와 발언자 및 발언 요지 ②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회원 중 그 회의에서 지명한 의사록 서명인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p>제5장 이사회</p> <p>제17조 【이사회 구성 및 소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이 의장이 된다.
<p>제18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학술대회 주관에 관한 사항 3. 집행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4. 집행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5.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6. 학회 발전을 위한 제반 사항 7.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p>제19조 【이사회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정관의 개정은</p>

개정 조문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불출석 이사는 출석이사에게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나 총 위임숫자가 출석이사 수를 초과할 수 없다. 서면 결의 시 서면 답변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6장 집행임원회

제20조【집행임원회의 구성과 의결】

1. 본회는 제3조의 사업과 본회의 원활한 발전육성을 위하여 집행임원회를 둔다.
2. 집행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집행위원장 및 간사로 구성된다.
3. 집행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집행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각각 본회의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겸한다.
5. 집행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6. 집행임원회는 재적 집행임원 4분의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집행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집행임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협의 또는 의결하는 기능을 갖는다.

1. 본회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5.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6. 기부금의 수령에 관한 사항
7. 정관 개정안의 발의에 관한 사항
8. 본 정관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장 위원회

제22조【집행위원회 등】

- ① 본회의 목적달성 및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총무위원회, 재무위원회,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홍보위원회의 집행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 ② 집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다.

제23조【윤리위원회 등】

- ① 본회의 사업 또는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회원의 학술활동, 연구 및 출판, 기타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 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다.

제24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윤리위원회 위원은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총무위원장,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기타 위원은 사안과 관련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③ 윤리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조문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장 보칙 제25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 【재정】 ① 본회의 재원은 회원의 연회비, 행사참가비, 찬조금 및 기부금 등 기타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기부금의 수령 여부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7조 【회비 및 참가비】 ① 회비는 연회비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회비 및 각종 행사 참가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8조 【사무처 등】 ①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회원 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교육 기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에프디시법제연구원'을 설치하고, 원장은 회장이 부회장 중 1인을 추천 및 임명하고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29조 【운영규정】 사무처와 한국에프디시법제연구원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 【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200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승인) 2008년 1월 25일 법인정관변경 3. (승인) 2009년 7월 3일 법인정관변경 4. (승인) 2018년 2월 20일 법인정관변경